

도 시 철 도 법 시 행 규 칙
일 부 개 정 법 률 안

기 관 명 (부서명)	국토교통부 (철도투자개발과)
제출 연월일	2020. . .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

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도시철도운송사업자의 운임 및 도시철도운송약관의 신고,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의 변경의 신고, 사업의 휴업·폐업 및 재개의 신고 등 법령상 신고의 처리절차를 명확하도록 「도시철도법」이 일부개정(법률 제17450호, 2020. 6. 9. 공포, 9. 10. 시행) 되었고, 신고 수리기간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기간을 정하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제9조로 및 제10조로 하고, 제9조(종전의 제6조)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법 제36조제1항에서 “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”이란 60일을 말한다.

⑤ 법 제36조제4항에서 “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”이란 60일을 말한다.

제6조(운임의 신고) 법 제31조제1항에서 “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”이란 60일을 말한다.

제7조(도시철도운송약관의 신고) 법 제32조에서 “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”이란 60일을 말한다.

제8조(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의 변경 신고) 법 제33조제1항에서 “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”이란 60일을 말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u><신 설></u>	제6조(운임의 신고) 법 제31조제1항에서 “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”이란 60일을 말한다.
<u><신 설></u>	제7조(도시철도운송약관의 신고) 법 제32조에서 “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”이란 60일을 말한다.
<u><신 설></u>	제8조(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의 변경 신고) 법 제33조제1항에서 “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”이란 60일을 말한다.
제6조(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절차) ① ~ ③ (생략)	제9조(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절차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④ 법 제36조제1항에서 “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”이란 60일을 말한다.
<u><신 설></u>	⑤ 법 제36조제4항에서 “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”이란 60일을 말한다.
제7조(행정처분의 세부기준) (생략)	제10조(행정처분의 세부기준) (현행 제7조와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철도투자개발과	
연 락 처	(044) 201-3960